

전 라 남 도

2016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용역보고서

2016. 6. 15

신한회계법인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본 용역보고서를 “2016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6. 15.

신 한 회 계 법 인

공 인 회 계 사 이 상 문

목 차

용역보고서	1
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4
1. 목포도시가스	4
2. 대화도시가스	4
3. 전남도시가스	5
4. 해양도시가스	5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6
1. 총칙	6
2. 적정원가의 산정	8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0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1
III.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13
1. 목포도시가스	13
2. 대화도시가스	22
3. 전남도시가스	32
4. 해양도시가스	41
IV. 용도별 공급비용	50
1. 목포도시가스	50
2. 대화도시가스	51
3. 전남도시가스	52
4. 해양도시가스	53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54
1. 가정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54
2. 신규 공급지역(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57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	58
4. 2015년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지역별 특성 분석 ..	59
5.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과 평균 공급비용 산정 (대안4)	62
6. 시설분담금 미시행에 따른 가정용과 취사전용의 교차보조 문제 등에 대한 대 안	65
7. 여수지역 배관 투자재원 관련 검토	65
8.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69
9.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70
10.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71
11.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72
12.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지침에 대한 의견 및 대안제시	73
13.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74
14.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방안	75
 별첨 : 부속명세서.....	77

용역보고서

전라남도지사 귀하

2016년 6월 15일

폐 회계법인(이하 “법인”)은 전라남도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계약에 따라 목포, 대화, 전남, 해양 도시가스(이하 “회사”)가 2016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당 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가스 회사별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제시

- 회사별 도시가스 총공급비용, 적정 투자보수율 및 단위당 공급비용 분석
- 용도별 판매열량, 공급비용 및 대안별 요금적용 사유

나. 도시가스 공급열량 산출 및 검토

- 승인된 추정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의 차이 검토
- 2015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승인 공급열량과 실제 공급열량과의 차이가 $\pm 3\%$ 를 초과한 경우는 정산하여 2016년도 공급비용에 적용

다. 현행 공급비용에 대한 적정원가 분석 및 대안제시

- 주택용 기본요금 770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대안제시
- 기부금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2015. 2. 1.)안 반영
- 신규 공급지역(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용도별 공급비용의 적정원가 산정 대안제시

라. 전라남도의 “공급비용 단일화”계획과 관련, 현재 여건에서 단일화가 가능한 용도별 공급비용 및 적용할 적정 공급비용 분석

-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와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의 지역별 특성 분석
-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 최소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용도·회사별 평균 공급비용 산정

마. 정부정책 등 반영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 방안

- 시설분담금 미 시행에 따른 주택용 및 취사전용 공급원가의 교차보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

- 여수지역의 산업용 열량정산분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
 - ① 배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공사내역 및 향후계획 방안 제시
 - ② 판매열량차이 정산분에 대한 배관 투자재원을 1m³ 판매물량으로 산정 방안 제시
-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① 공급권역별 전·출입 세대수와 이에 따른 전체 비용
 - ② 철거비용 폐지로 인상되는 지역별 공급비용과 이에 따른 장·단점 분석
 - ③ 타 시도 적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 도시지역임에도 경제성이 낮은 주택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기피에 대한 개선 대안제시
-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지침에 대한 의견 및 대안제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급비용 경감 보전

바. 전라남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보급률 향상을 위한 타 시도 적용사례 조사 및 대안 제시

사.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결재방안 제시

- 신용카드 자동이체 결재방식이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 타 시도 적용 사례조사 및 분석

당 법인은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제표, 경영/산업 정보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에게 대한 질문과 검토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수행 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회사 제시 자료의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는 2016년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도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 상의 용역 결과는 용역 기준일 이후의 적용 법규 또는 정책의 변동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용역 기준일 이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갱신할 책임이 없습니다.

신 한 회 계 법 인

공 인 회 계 사 이 상 문

1.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요약표

회사가 제시한 2016년의 추정 총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에 대한 당 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비고
A. 적정원가	12,677,092	(2,069,921)	10,607,171	
B. 요금기저	39,357,248	(4,699,142)	34,658,106	
C. 투자보수율	6.18%	1.01%	7.19%	
D. 투자보수	2,432,409	60,850	2,493,259	B X 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5,109,501	(2,009,071)	13,100,430	A+D+E
G. 총공급열량	5,272,036	(119,225)	5,152,811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8660	(0.3236)	2.5424	F÷G

2.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비고
A. 적정원가	7,966,073	(767,033)	7,199,040	
B. 요금기저	11,203,692	(1,250,690)	9,953,002	
C. 투자보수율	7.73%	-	7.73%	
D. 투자보수	865,778	(96,648)	769,129	B X C
E. 투자재원	2,250,000	66,500	2,316,500	
F. 총공급비용	11,081,851	(797,182)	10,284,669	A+D+E
G. 총공급열량	6,027,000	-	6,027,000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1.8387	(0.1323)	1.7064	F÷G

3.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비고
A. 적정원가	22,602,594	(4,617,682)	17,984,911	
B. 요금기저	48,390,450	(2,945,006)	45,445,444	
C. 투자보수율	7.50%	-	7.50%	
D. 투자보수	3,631,520	(221,012)	3,410,509	B X 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26,234,114	(4,838,694)	21,395,420	A+D+E
G. 총공급열량	9,326,694	(100,000)	9,226,695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8128	(0.494)	2.3189	F÷G

4.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비고
A. 적정원가	9,090,387	(591,698)	8,498,689	
B. 요금기저	47,662,681	(3,768,794)	43,893,888	
C. 투자보수율	7.73%	-	7.73%	
D. 투자보수	3,683,598	(291,648)	3,391,949	B X C
E. 투자재원	-	-	-	
F. 총공급비용	12,773,984	(883,346)	11,890,638	A+D+E
G. 총공급열량	4,734,126	-	4,734,126	
단위열량당공급비용(원/MJ)	2.6983	(0.1866)	2.5117	F÷G

II. 공급비용 산정기준

당 법인은 목포, 대화, 전남, 해양도시가스사가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2016.4.22 개정) (이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 산정기준 제 2 조 (공급비용의 구성)

-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 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가스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공사나 가스기기판매 등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산정시 사업자가 2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경감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 산정기준 제 3 조 (공급비용 산정기간)

- ①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급비용 산정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및 적용한다.
- ③ 공급비용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 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할 수 있

다.

3) 산정기준 제 4 조 (원가산정 자료)

- ① 공급비용은 외부감사를 받아 수정사항이 반영된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요금 계산을 위한 제반 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산정자료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원가검증에 필요한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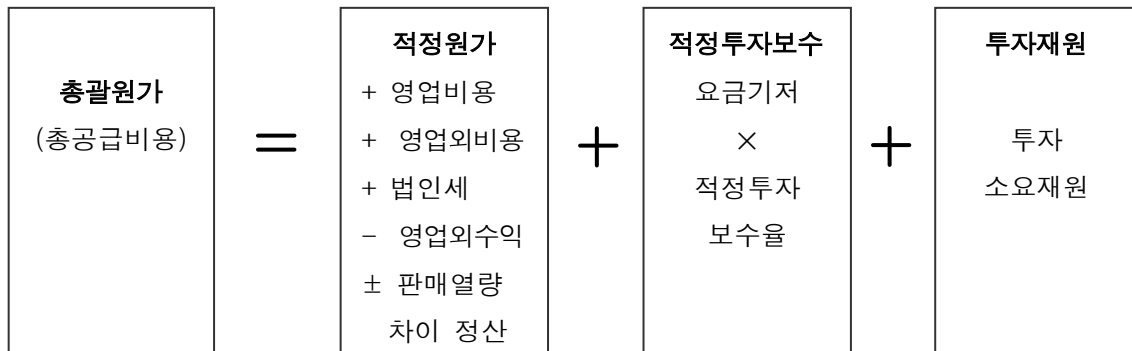
4) 산정기준 제 5 조 (판매열량)

공급비용 산정기간 동안의 판매열량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수급계획, 회사별 판매실적, 회사별 수요예측치, 관련기관의 수요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5) 산정기준 제 5 조의 2 (판매열량 차이의 정산)

- ① 제5조의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판매열량과 실제판매열량간에 차이 (이하 “판매열량 차이”라 한다)가 $\pm 3\%$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한다.
- ② 정산금액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승인총괄원가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회수한 회수총괄원가의 차이로 계산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승인총괄원가는 공급비용 승인시 기준이 되는 추정판매량에 승인된 사용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회수총괄원가는 사후적 실적판매열량에 승인된 사용열량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 하여 반영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다음연도 평균공급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④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도시가스사업으로 인하여 누적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의 판매 열량차이가 $+3\%$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6) 총괄원가의 구성



2. 적정원가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6 조 (적정원가의 구성)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과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정기준 제 7 조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각 항목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

1.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 인원수와 정부의 임 금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인건비는 급여 및 임금,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

i) 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함)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자산 취득당시 세법상의 기준내용년수로 하고 기타의 유형자산은 사업자의 상각방법 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ii) 유형자산의 당기 증감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증감한 것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

iii) 특별상각비는 적정원가에서 제외한다.

2.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및 투자자원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미상각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취득예상 무형자산은 잔여상각 내용년수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되 당해 회계연도 취득분은 기중 평균적으로 취득 하는 것으로 하여 상각한다.

④ 기타의 영업비용

저장/기화부문, 공급관리부문,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 항목별 비용발생 변수를 감안하고 물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접대비 등 관계법령에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은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반영하며,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중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7등급 초과분)에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부대사업관련 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하여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가로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타의 영업비용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3) 산정기준 제 8 조 (영업외비용)

-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기부금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과의 관련성, 지역내 에너지복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여부를결정)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비용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비용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4) 산정기준 9 조 (영업외수익)

- ①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 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유형자산의 처분 등으로 영업외수익에 현저한 증감을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적절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한다.
- ② 기타 영업외수익은 직전년도 실적금액을 거치하여 반영한다.

3.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1) 산정기준 제 11 조 (적정투자보수의 구성)

-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 ②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기준 제 12 조 (요금기저)

-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헴자산 및 타 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되었던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토지와 공급설비의 재평가차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산처분계획을 고려한 순증감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공급설비의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 + 당기 투자계획 금액 - 당기 처분자산순액 -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 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 ⑥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 ⑦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영업비용(원재료비 제외)에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3) 산정기준 제 13 조 (적정투자보수율)

-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에 2%p 내지 3%p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후투자보수 상당액을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투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3%p 이내로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 중 직전년도 도시가스보급률(공급권역내 공급가구/공급권역내 공급 가능가구수)이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경우
 2. 도시가스보급률이 전국평균보급률을 상회하더라도 공급권역 내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획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수용가 시설전대 차입금은 제외)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에 법인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동조 제⑤항에서 산출된 타인자본으로 관련이자를 나누어 구한 율로 한다.
- ④ 자기자본은 「유상증자 누계액 + 당기순이익 누계액(결손금 제외) - 배당금 누계액」으로 하되 제외되는 결손금은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에 한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 회사는 회사전체의 자기자본에서 시설분담금 누계액을 차감한 기초/기말 평균가액을 사업부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⑤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한다. 단, 사업부제 형태의회사는 사업부 고유 평균차입금과 회사전체 평균차입금을 사업부 자산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액 + 순무형자산액 + 평균건설중인자산 + 운전자금 2개월분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 × 타인자본 구성비

4. 공급비용 및 도시가스요금의 책정

1) 산정기준 제 14 조 (요금의 책정)

- ① 공급비용의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의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시·도지사는 가스요금을 단일요금체계, 2 부제요금체계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도(취사전용, 난방전용, 취사난방용 등)는 2 부제요금체계로 하고 그 외의 용도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2 부제요금체계는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다.
1. 기본요금은 수용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 하되, 기본요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사용열량요금은 원재료비에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④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은 냉방용 가스공급에 소요된 적정한 원가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제 15 조 (도시가스 요금수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수준은 원재료비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 단가를 더하여 책정한다.

Ⅲ. 총 공급비용 및 단위당 공급비용 산정내역

-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목포도시가스사는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및 강진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4개 지역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목포, 영암, 무안, 강진 4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 후 금액
(A) 영업비용	11,211,558	(1,862,713)	9,348,845
인건비	4,055,810	(772,323)	3,283,487
감가상각비	2,922,090	(331,674)	2,590,416
기타영업비용	4,233,658	(758,717)	3,474,941
(B) 영업외비용	211,909	(150,000)	61,909
(C) 영업외수익	35,575	(2,999)	32,576
(D) 법인세비용	776,574	(73,347)	703,227
(E)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231,064	-	231,064
(F) 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 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12,395,530	(2,083,061)	10,312,469
(H)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12,395,530	(2,083,061)	10,312,469
(J) 2015년 열량정산반영(*)	281,562	13,140	294,702
(K) 적정원가(I+J)	12,677,092	(2,069,921)	10,607,171

(*) 2015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1. 영업비용			
1-a추정판매량	5,262,418	-	5,262,418
1-b실제판매량	4,863,602	-	4,863,602
1-c허용오차율(±3%)	3.00%	-	3.00%
1-d판매량차이(b-a)	-398,816	-	-398,816
1-e허용오차범위(b X c)	145,908	-	145,908
1-f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89,454	-	89,454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192,108	13,140	205,248
5. 금년 정산반영액(2.-3.+4.)	281,562	13,140	294,702

정산금액을 이연 반영 할 경우 차차기(2차)년도 이연분 정산금액에는 이연에 따른 자본비용을 정산금액에 고려하여야 하는 바, 요금산정시 적용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2차년도 정산금액= 균등 이연된 정산금액×(1+1차년도 투자보수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금액을 이연 반영합니다.

회사의 경우 2014년 발생한 2015년도 열량정산 금액에 대한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자본비용 고려 시 적용한 2015년도 투자보수율은 6.84%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정산발생금액	기 반영금액	금년 반영금액	차기 이월금액
발생년도(2014년)	384,216	192,108	192,108	-
가산조정-자본비용	-	-	13,140	-
발생년도(2015년)	89,454	-	89,454	-
합 계	473,670	192,108	294,702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수정)인 3.3%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급여	3,229,911	(634,976)	2,594,935
상여금	255,772	(42,535)	213,237
제수당	185,136	(30,788)	154,348
잡급	28,402	(4,723)	23,679
퇴직급여	356,589	(59,301)	297,288
합 계	4,055,810	(772,323)	3,283,487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건물	40,135	-	40,135

구축물	6,031	-	6,031
공급설비	2,535,224	(286,363)	2,248,861
차량운반구	44,020	-	44,020
기타의유형자산	141,926	(19,310)	122,616
무형자산	154,754	(26,000)	128,754
합 계	2,922,090	(331,674)	2,590,416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복리후생비	377,187	(79,123)	298,064
여비교통비	107,867	(3,486)	104,381
통신비	77,807	(1,202)	76,605
수도광열비	69,797	(1,283)	68,514
소모품비	328,833	(4,182)	324,651
세금과공과	452,702	(42,491)	410,211
지급임차료	73,377	(13,307)	60,070
지급수수료	1,591,934	(202,008)	1,389,926
수선비	449,840	(149,827)	300,013
차량유지비	102,386	(12,282)	90,104
보험료	108,432	(1,392)	107,040
접대비	79,247	(1,460)	77,787

광고선전비	13,218	(5,248)	7,970
운반비	104,003	(1,917)	102,086
도서인쇄비	68,040	(14,409)	53,631
교육훈련비	7,335	(4,089)	3,246
대손상각비	220,000	(220,000)	-
잡비	1,653	(1,012)	641
합 계	4,233,658	(758,717)	3,474,941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영된 금액은 공급규정을 반영한 기부금 해당액 등입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영업외비용	211,909	(150,000)	61,909
영업외수익	35,575	(2,999)	32,576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과 목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	--------	-----	-----

장애인 등	51,571	192,098	
차상위 등	6,706	12,385	
다자녀 등	28,826	26,581	
합 계	87,103	231,064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① 세후투자보수	2,432,409	60,850	2,493,259
② 법인세율	24.2%	-2.2%	22.0%
③ 세전투자보수 (=①/(1-②))	3,208,983	(12,497)	3,196,486
④ 법인세비용 (=③-①)	776,574	(73,347)	703,227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운전자금	1,344,911	(218,507)	1,126,405
유형자산	37,430,032	(4,338,635)	33,091,396
무형자산	502,166	(117,000)	385,166
임차보증금	80,139	(25,000)	55,139
합 계	39,357,248	(4,699,142)	34,658,106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34,317,067	(352,117)	33,964,950
당기증가 계획치	5,117,045	(4,613,018)	504,027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767,336	(305,674)	2,461,662
(B) 당기말 미상각잔액	36,666,776	(4,659,461)	32,007,315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35,491,922	(2,505,789)	32,986,133
(D) 토지재평가차익	-	-	-
(E) 건설중인자산상당액	1,938,110	(1,832,846)	105,264
(F)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37,430,032	(4,338,635)	33,091,396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319,543	-	319,543
당기증가 계획치	520,000	(260,000)	26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54,754	(26,000)	128,754
(B) 당기말 미상각잔액	684,789	(234,000)	450,789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502,166	(117,000)	385,166

(D) 비가스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C-D]	502,166	(117,000)	385,166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잔액	30,139	-	30,139
당기증가 계획치	100,000	(50,000)	5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 당기말 잔액	130,139	(50,000)	80,139
(C) 평균 잔액[(A+B)÷2]	80,139	(25,000)	55,139
(D)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80,139	(25,000)	55,139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CAPM 등을 고려한 기회비용 및 지방사업자로서 전국 평균보급률 79.4%에 미달함에 따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중평균투자 보수율에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자기자본	34,762,363	-	34,762,363
타인자본	8,096,630	-	8,096,630
자기자본수익률	3.48%	1.25%	4.73%
타인자본수익률	1.90%	-	1.90%
가중평균투자보수율	3.18%	1.01%	4.19%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6.18%	1.01%	7.19%

4.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6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수정후)
공급열량	4,701,911	4,645,093	4,863,602	5,152,811
증가열량	(74,252)	(56,818)	218,509	289,209
증가율	-1.55%	-1.21%	4.70%	5.95%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 3%)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수정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월	2월	3월	4월	실적열량 계
열량	724,638	675,750	589,420	450,640	2,440,448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열량	301,820	309,899	306,338	236,495	244,887
월	10월	11월	12월	추정열량계	
열량	281,313	450,161	581,450	2,712,363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440,448 \text{ GJ} + 2,712,363 \text{ GJ} = 5,152,811 \text{ GJ}$$

–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대화도시가스는 여수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여수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 후 금액
(A) 영업비용	6,951,422	(722,552)	6,228,870
인건비	3,810,109	(517,084)	3,293,025
감가상각비	861,321	(84,778)	776,543
기타영업비용	2,279,992	(120,691)	2,159,301
(B) 영업외비용	60,360	-	60,360
(C) 영업외수익	31,776	(7,998)	23,778
(D) 법인세비용	244,194	(27,260)	216,934
(E)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252,194	(25,219)	226,975
(F) 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 현저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A+B-C+D+E±F)	7,476,394	(767,033)	6,709,361
(H)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I)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G+H)	7,476,394	(767,033)	6,709,361
(J) 2015년 열량정산반영(*)	489,679	-	489,679
(K) 적정원가(I+J)	7,966,073	(767,033)	7,199,040

(*) 2015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1. 영업비용			
1-a추정판매량	6,672,750	-	6,672,750
1-b실제판매량	5,638,516	-	5,638,516
1-c허용오차율(±3%)	3.00%	-	3.00%
1-d판매량차이(b-a)	(1,034,234)	-	(1,034,234)
1-e허용오차범위(b X c)	169,155	-	169,155
1-f 허용오차초과여부	초과		초과
2. 총 정산대상금액	1,721,914	-	1,721,914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1,232,235)	-	(1,232,235)
5. 금년 정산반영액(2.-3.+4.)	489,679	-	489,679

정산금액을 이연 반영 할 경우 차차기(2차)년도 이연분 정산금액에는 이연에 따른 자본비용을 정산금액에 고려하여야 하는 바, 요금산정시 적용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2차년도 정산금액= 균등 이연된 정산금액×(1+1차년도 투자보수율)”의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금액을 이연 반영합니다.

회사의 경우 2013년 발생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열량정산 금액에 대한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자본비용 고려 시 적용한 2014년도와 2015년도 투자보수율은 각각 7.71%와 7.36%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정산발생금액	기 반영금액	금년 반영금액	차기 이월금액
발생년도(2013년)	(3,099,310)	(2,066,206)	(1,033,104)	-
가산조정-자본비용	-	-	(199,131)	-
발생년도(2015년)	1,721,914	-	1,721,914	-
합 계	(1,377,396)	(2,066,206)	489,679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수정)인 3.3%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급여	2,761,641	(508,723)	2,252,918
상여금	562,720	(6,361)	556,359
제수당	197,095	(1,990)	195,105
퇴직급여	288,653	(9)	288,644
합 계	3,810,109	(517,084)	3,293,025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건물	-	-	-
구축물	-	-	-

공급설비	831,143	(71,448)	759,695
차량운반구	-	-	-
기타의유형자산	30,178	(13,329)	16,849
무형자산	-	-	-
합 계	861,321	(84,778)	776,543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복리후생비	326,886	(5,317)	321,569
여비교통비	6,900	(62)	6,838
통신비	41,856	(370)	41,486
전력비	10,679	(94)	10,585
소모품비	118,840	(1,048)	117,792
세금과공과	227,177	(8,860)	218,317
지급수수료	1,265,292	(57,844)	1,207,448
수선비	37,394	(330)	37,064
차량유지비	88,451	(783)	87,668
보험료	35,860	(316)	35,544
접대비	18,895	(167)	18,728
경조비	6,865	(61)	6,804
도서인쇄비	37,497	(332)	37,165

교육훈련비	4,459	(39)	4,420
사무용품비	6,231	(54)	6,177
대손상각비	45,000	(45,000)	-
잡비	1,710	(15)	1,695
합 계	2,279,992	(120,691)	2,159,301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영된 금액은 공급규정을 반영한 기부금 해당액 등입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영업외비용	60,360	-	60,360
영업외수익	31,776	(7,998)	23,778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과 목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2,391	111,353	
장애인	1,685	80,077	

유공자	31	1,592	
차상위계층	479	11,172	
다자녀	1,889	22,781	
합 계	6,474	226,975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① 세후투자보수	865,778	(96,648)	769,129
② 법인세율	22.0%	-	22.0%
③ 세전투자보수 (=①/(1-②))	1,109,972	(123,908)	986,063
④ 법인세비용 (=③-①)	244,194	(27,260)	216,934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운전자금	959,408	(98,794)	860,614
유형자산	10,234,284	(1,146,895)	9,087,388
무형자산	-	-	-
임차보증금	10,000	(5,000)	5,000
합 계	11,203,692	(1,250,690)	9,953,002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8,944,095	-	8,944,095
당기증가 계획치	3,202,738	(2,378,569)	824,169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861,321	(84,778)	776,543
(B) 당기말 미상각잔액	11,285,512	(2,293,791)	8,991,721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10,114,804	(1,146,895)	8,967,908
(D) 토지재평가차익	-	-	-
(E) 건설중인자산상당액	119,480	-	119,480
(F)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10,234,284	(1,146,895)	9,087,388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잔액	-	-	-
당기증가 계획치	20,000	(10,000)	1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 당기말 잔액	20,000	(10,000)	10,000
(C) 평균 잔액[(A+B)÷2]	10,000	(5,000)	5,000
(D)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10,000	(5,000)	5,00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CAPM등을 고려한 기회비용 및 지방사업자로서 전국 평균보급률 79.4%에 미달함에 따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중평균투자보수율에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자기자본	19,410,496	-	19,410,496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4.73%	-	4.73%
타인자본수익률	-%	-	-%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73%	-	4.73%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4. 투자재원

투자재원은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총괄원가 외에 시·도지사가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대화도시가스사의 경우 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배관 투자계획과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보급률 증대를 감안하고 공급비용의 급격한 변동 및 인접 지역과의 과도한 공급비용 차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의 배관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금번 공급비용 산정 시 2,316,500천원의 투자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전년까지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된 투자재원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투자재원	사용금액	잔액
2009년	2,284,176	1,104,441	1,179,735
2010년	1,759,398	191,697	1,567,701
2011년	1,500,000	508,777	991,223
2012년	1,920,100	2,146,592	(226,492)
2013년	4,000,000	2,121,655	1,878,345
2014년	7,174,014	2,087,351	5,086,663
2015년	4,737,000	7,191,816	(2,454,816)
합계	23,374,688	15,352,329	8,022,359

투자재원으로 취득한 공급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관투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수요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배관공사비를 일부 부담(시설분담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공급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투자보수가 산정되는 요금기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투자재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할 경우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상기 투자재원은 현재 해당 재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통한 적재적소의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장기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5.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6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수정후)
공급열량	8,658,061	6,956,291	5,638,516	6,027,000
증가열량	2,399,960	(1,701,770)	(1,317,775)	388,484
증가율	38.35%	-19.66%	-18.94%	6.89%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

3%)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월	2월	3월	4월	실적열량 계
열량	675,014	659,566	536,796	505,530	2,376,906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열량	508,870	402,987	372,923	375,349	413,168
월	10월	11월	12월	추정열량계	
열량	419,820	528,835	628,143	3,650,094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376,906 \text{ GJ} + 3,650,094 \text{ GJ} = 6,027,000 \text{ GJ}$$

-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전남도시가스사는 기존 공급권역인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4개 지역 외에 보성군 및 고흥군(2017년 공급개시 예정)을 공급함에 따라 6개 지역을 동일 공급 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6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 후 금액
(A) 영업비용	20,418,327	(4,342,736)	16,075,591
인건비	5,608,935	(554,142)	5,054,793
감가상각비	3,626,565	(115,968)	3,510,597
기타영업비용	11,182,827	(3,672,627)	7,510,200
(B) 영업외비용	213,000	(37,310)	175,690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1,159,404	(70,560)	1,088,843
(E)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716,732	(167,076)	549,656
(F) 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 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95,131	-	95,131
(H) 현재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 (A+B-C+D+E±F+G)	22,602,594	(4,617,682)	17,984,911
(I)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J)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H+I)	22,602,594	(4,617,682)	17,984,911
(K) 2015년 열량정산반영(*)	-	-	-
(L) 적정원가(J+K)	22,602,594	(4,617,682)	17,984,911

(*) 2015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1. 영업비용			
1-a추정판매량	8,441,262	-	8,441,262
1-b실제판매량	8,558,659	-	8,558,659
1-c허용오차율(±3%)	3.00%	-	3.00%
1-d판매량차이(b-a)	117,397	-	117,397
1-e허용오차범위(b X c)	256,760	-	256,760
1-f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수정)인 3.3%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급여	3,461,011	(237,103)	3,223,908
상여금	1,587,168	(273,795)	1,313,373
제수당	191,971	(7,771)	184,200
잡급	35,473	(35,473)	-

퇴직급여	333,312	-	333,312
합 계	5,608,935	(554,142)	5,054,793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건물	209,934	(3,321)	206,613
구축물	1,383	-	1,383
공급설비	3,081,213	(112,646)	2,968,567
차량운반구	42,509	-	42,509
기타의유형자산	177,274	(1)	177,273
무형자산	114,252	-	114,252
합 계	3,626,565	(115,968)	3,510,597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복리후생비	1,263,571	(82,721)	1,180,850
여비교통비	106,862	(10,194)	96,668
통신비	587,291	(327,804)	259,487
수도광열비	104,991	(14,892)	90,099
소모품비	117,273	(51,325)	65,948
세금과공과	339,223	(42,351)	296,872
지급임차료	162,628	(32,345)	130,283
지급수수료	6,505,011	(1,998,196)	4,506,815
수선비	742,156	(462,405)	279,751
차량유지비	113,620	(13,862)	99,758
보험료	26,671	(209)	26,462
접대비	167,913	(16,018)	151,895
광고선전비	32,475	(27,043)	5,432
운반비	-	-	-
도서인쇄비	22,868	(3,822)	19,046
교육훈련비	77,245	(37,594)	39,651
회의비	16,890	(1,611)	15,279
계량기교체비	692,963	(462,595)	230,369
대손상각비	86,000	(86,000)	-
잡비	17,176	(1,640)	15,536
합 계	11,182,827	(3,672,627)	7,510,200

(*) 지급수수료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함.

라.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

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영된 금액은 공급규정을 반영한 기부금 해당액 등입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영업외비용	213,000	(37,310)	175,690
영업외수익	-	-	-

마.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과 목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1,969	199,729	
장애인	2,518	291,989	
국가유공자 등	58	5,935	
사회복지시설	137	10,977	
다자녀	2,348	41,026	
합 계	7,030	549,656	

바.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① 세후투자보수	3,631,520	(221,012)	3,410,509
② 법인세율	24.2%	-	24.2%
③ 세전투자보수 (=①/(1-②))	4,790,924	(291,572)	4,499,352
④ 법인세비용 (=③-①)	1,159,404	(70,560)	1,088,843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운전자금	2,779,504	(690,128)	2,089,376
유형자산	44,360,844	(2,194,878)	42,165,966
무형자산	699,953	-	699,953
임차보증금	550,150	(60,000)	490,150
합 계	48,390,450	(2,945,006)	45,445,444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41,246,821	-	41,246,821
당기증가 계획치	9,131,863	(4,222,959)	4,908,904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3,527,728	(131,383)	3,396,345

(B) 당기말 미상각잔액	46,850,956	(4,091,576)	42,759,380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44,048,889	(2,045,788)	42,003,100
(D) 토지재 평가차익	-	-	-
(E) 건설중인자산상당액	311,955	(149,090)	162,865
(F)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44,360,844	(2,194,878)	42,165,966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703,475	-	703,475
당기증가 계획치	107,208	-	107,208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114,252	-	114,252
(B) 당기말 미상각잔액	696,431	-	696,431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699,953	-	699,953
(D) 비가스사업용자산	-	-	-
무형자산계 [C-D]	699,953	-	699,953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잔액	430,150	-	430,150
당기증가 계획치	240,000	(120,000)	120,000
당기감소 계획치	-	-	-
(B) 당기말 잔액	670,150	(120,000)	550,150
(C) 평균 잔액 $[(A+B) \div 2]$	550,150	(60,000)	490,150

(D)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임차보증금계[C-D]	550,150	(60,000)	490,15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CAPM등을 고려한 기회비용 및 지방사업자로서 전국 평균보급률 79.4%에 미달함에 따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중평균투자보수율에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자기자본	38,453,924	-	38,453,924
타인자본	4,781,805	-	4,781,805
자기자본수익률	4.73%	-	4.73%
타인자본수익률	2.71%	-	2.71%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50%	-	4.50%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50%	-	7.50%

4.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6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수정후)
공급열량	8,490,976	8,919,517	8,558,659	9,226,695
증가열량	769,544	428,541	(360,858)	668,036
증가율	9.97%	5.05%	-4.05%	7.81%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 3%)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수정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월	2월	3월	4월	실적열량 계
열량	1,126,055	1,056,382	887,833	717,874	3,788,144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열량	601,343	625,862	602,567	592,381	524,686
월	10월	11월	12월	추정열량계	
열량	699,194	785,451	1,007,067	5,438,551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3,788,144 \text{ GJ} + 5,438,551 \text{ GJ} = 9,226,695 \text{ GJ}$$

– 해양도시가스

1. 적정원가

해양도시가스사는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해남군 및 장흥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공급함에 따라 8개 지역을 동일 공급권역으로 분류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정원가 및 추정 공급열량 역시 8개 지역에 대해 산출되었습니다.

금년 적정원가 산정내역은 개별 항목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항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 후 금액
(A) 영업비용	7,908,213	(514,304)	7,393,909
인건비	2,058,898	(161,575)	1,897,323
감가상각비	2,936,511	(114,365)	2,822,146
기타영업비용	1,688,827	(189,087)	1,499,740
고객센터지급수수료	1,223,977	(49,277)	1,174,700
(B) 영업외비용	-	4,866	4,866
(C) 영업외수익	-	-	-
(D) 법인세비용	1,038,964	(82,260)	956,704
(E)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액 등	107,241	-	107,241
(F) LPG제조설비 특별손익	-	-	-
(G) 지연조정 공급비용 차이	35,969	-	35,969
(H) 현재한차이 반영전 적정원가 (A+B-C+D+E±F+G)	9,090,387	(591,698)	8,498,689
(I)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금액	-	-	-
(J) 영업외수익,비용 이연반영후 적정원가(H+I)	9,090,387	(591,698)	8,498,689
(K) 2015년 열량정산반영(*)	-	-	-
(L) 적정원가(J+K)	9,090,387	(591,698)	8,498,689

(*) 2015년 추정 판매열량 대비 실제 판매열량 차이에 대한 정산반영 여부

(단위: GJ, %)

구 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1. 영업비용			
1-a추정판매량	4,598,206	-	4,598,206
1-b실제판매량	4,488,643	-	4,488,643
1-c허용오차율(±3%)	3.00%	-	3.00%
1-d판매량차이(b-a)	(109,563)	-	(109,563)
1-e허용오차범위(b X c)	134,659	-	134,659
1-f 허용오차초과여부	미달		미달
2. 총 정산대상금액	-	-	-
3. 이연 대상금액	-	-	-
4. 전년 이월된 금액	-	-	-
5. 금년 정산반영액(2.-3.+4.)	-	-	-

가. 인건비

조정내역 :

인건비는 합리적인 인원증감을 반영하여 부문별 적정인원수를 산정하고, 급여 인상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임금상승률 예측치(수정)인 3.3%를 적용하고 회사의 인건비 지급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조정된 인건비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의 금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급여	1,048,302	(44,010)	1,004,292
상여금	779,680	(70,530)	709,150
제수당	33,633	(9,684)	23,949
잡급	4,878	(4,878)	-

퇴직급여	192,405	(32,473)	159,932
합 계	2,058,898	(161,575)	1,897,323

나.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

감가상각비는 가스사업과 비가스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안분, 공급설비 기초가액과 금년 감가상각비의 재계산 및 투자계획 중 공급설비의 집행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차기연도로 이월함에 따른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건물	35,717	-	35,717
구축물	-	-	-
공급설비	2,680,661	(103,445)	2,577,216
차량운반구	-	-	-
기타의유형자산	142,960	(728)	142,232
무형자산	77,173	(10,192)	66,981
합 계	2,936,511	(114,365)	2,822,146

다. 기타영업비용

조정내역 :

기타 영업비용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0%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중 일부 항목은 회사의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발생비용만을 고려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복리후생비	472,207	(72,603)	399,604
여비교통비	8,592	(675)	7,917
통신비	90,044	(9,490)	80,554
수도광열비	18,749	(2,054)	16,695
소모품비	14,496	(1,367)	13,129
세금과공과	261,036	(54,719)	206,317
지급임차료	48,098	(5,495)	42,603
지급수수료	270,891	(12,292)	258,599
수선비	62,587	(4,579)	58,008
차량제경비	167,766	(7,540)	160,226
보험료	14,049	(442)	13,607
접대비	46,675	513	47,188
광고선전비	6,817	(1,752)	5,065
경비비	33,585	(2,476)	31,109
도서인쇄비	14,964	(1,293)	13,671
교육훈련비	11,149	(4,017)	7,132
사무용품비	1,567	(306)	1,261
계량기교체비	124,308	(6,272)	118,036
회의비	21,247	(2,229)	19,018
잡비	-	-	-
합 계	1,688,827	(189,087)	1,499,740

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조정내역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4항 및 5항에서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을 적정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해 서비스건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센터에서 수행된 안전점검, 검침, 고지서 송달 등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고객센터지급수수료	1,223,977	(49,277)	1,174,700

마. 영업외수익,비용

조정내역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8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비용,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 등은 적정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또한, 제9조에 의하면,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관련 이익 등은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도시가스공급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은 적정원가에 산입합니다. 영업외수익, 비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반영된 금액은 공급규정을 반영한 기부금 해당액 등입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영업외비용	-	4,866	4,866
영업외수익	-	-	-

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등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6항에 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가구, 천원)

과 목	예상 가구수	금 액	비 고
기초수급자 등	2,248	81,472	
사회복지시설 등	102	12,136	
다자녀	1,261	13,633	
합 계	3,611	107,241	

사. 법인세비용

조정내역 :

법인세비용은 회사제시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에 당 회계법인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투자보수를 재계산 한 후 산정하였습니다.

조정후금액 :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① 세후투자보수	3,683,598	(291,648)	3,391,949
② 법인세율	22.0%	-	22.0%
③ 세전투자보수 (=①/(1-②))	4,722,561	(373,908)	4,348,653
④ 법인세비용 (=③-①)	1,038,964	(82,260)	956,704

2. 요금기저

금년도 요금기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운전자금	828,617	(66,657)	761,960
유형자산	46,654,361	(3,666,466)	42,987,894
무형자산	69,704	(35,671)	34,033
임차보증금	110,000	-	110,000
합 계	47,662,681	(3,768,794)	43,893,888

가. 운전자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운전자금은 금년추정 영업비용(원료비제외)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유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39,439,388	-	39,439,388
당기증가 계획치	10,322,292	(4,228,182)	6,094,110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 감가상각비	2,859,337	(99,104)	2,760,233
(B) 당기말 미상각잔액	46,902,343	(4,129,078)	42,773,265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43,170,866	(2,064,539)	41,106,326
(D) 토지재평가차익	10,377	-	10,377
(E) 건설중인자산상당액	3,493,872	(1,601,927)	1,891,945
(F) 비가스사업용자산	-	-	-
유형자산계 [C-D+E-F]	46,654,361	(3,666,466)	42,987,894

다. 무형자산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미상각잔액	139,934	-	139,934
당기증가 계획치	1,164,000	(543,557)	620,444
당기감소 계획치	-	-	-
당기상각비	514,485	(67,945)	446,540

(B) 당기말 미상각잔액	789,449	(475,612)	313,837
(C) 평균 미상각잔액 $[(A+B) \div 2]$	464,692	(237,806)	226,886
(D) 비가스사업용자산	394,988	(202,135)	192,853
무형자산계[C-D]	69,704	(35,671)	34,033

라. 임차보증금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A) 전기말 잔액	295,000	-	295,000
당기증가 계획치	-	-	-
당기감소 계획치	-	-	-
(B) 당기말 잔액	295,000	-	295,000
(C) 평균 잔액 $[(A+B) \div 2]$	295,000	-	295,000
(D) 비가스사업용자산	185,000	-	185,000
임차보증금계[C-D]	110,000	-	110,000

3. 투자보수율

금년도의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세후 보수율은 CAPM등을 고려한 기회비용 및 지방사업자로서 전국 평균보급률 79.4%에 미달함에 따라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보급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중평균투자보수율에 3%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금액
자기자본	95,316,751	-	95,316,751
타인자본	-	-	-
자기자본수익률	4.73%	-	4.73%
타인자본수익률	-%	-	-%
가중평균투자보수율	4.73%	-	4.73%

투자보수율가산	3.00%	-	3.00%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4. 공급열량의 산출

회사의 최근 3개년 공급열량 실적과 2016년 추정열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수정후)
공급열량	3,780,916	4,130,365	4,488,643	4,734,126
증가열량	1,739,784	349,449	358,278	245,483
증가율	85.23%	9.24%	8.67%	5.47%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5조 2 (판매량 차이의 정산)에 의하여 일정차이(± 3%) 발생시에 판매열량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년 4월까지의 실적에 5월부터 금년말까지의 계획열량을 가산하여 산정한 회사의 제시열량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적열량

(단위: GJ)

월	1월	2월	3월	4월	실적열량 계
열량	550,876	576,434	522,486	407,660	2,057,456

나. 공급계획열량

(단위: GJ)

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열량	326,159	308,403	300,056	272,104	280,192
월	10월	11월	12월	추정열량계	
열량	312,813	387,280	489,663	2,676,670	

다. 금년도 추정공급열량

$$2,057,456 \text{ GJ} + 2,676,670 \text{ GJ} = 4,734,126 \text{ GJ}$$

IV. 용도별 공급비용

- 목포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취사용	522,041	3.0342	3.0135	-0.68%	3.0077	-0.87%	3.0342	0.00%	3.0342	0.00%
개별 난방용	1,955,508	3.0342	3.0135	-0.68%	3.0077	-0.87%	3.0342	0.00%	3.0342	0.00%
영업용1	414,727	3.4474	3.4267	-0.60%	3.4172	-0.87%	3.2765	-4.96%	3.3664	-2.35%
영업용2	128,017	3.3812	3.3605	-0.61%	3.3516	-0.87%	3.2135	-4.96%	3.3017	-2.35%
업무난방용	86,122	2.9392	2.9185	-0.70%	2.9135	-0.87%	2.7935	-4.96%	2.8701	-2.35%
냉난방공조용	157,462	1.6327	1.6120	-1.27%	1.6184	-0.87%	1.5517	-4.96%	1.5943	-2.35%
산업용1	1,450,243	1.4473	1.4266	-1.43%	1.4346	-0.87%	1.3755	-4.96%	1.4133	-2.35%
산업용2	150,412	0.4670	0.4463	-4.44%	0.4629	-0.87%	0.4438	-4.96%	0.4560	-2.35%
열병합용	-	2.9593	2.9386	-0.70%	2.9334	-0.87%	2.8126	-4.96%	2.8897	-2.35%
수송용	288,279	0.4906	0.4699	-4.22%	0.4863	-0.87%	0.4663	-4.96%	0.4906	0.00%
합계	5,152,811	2.4036	2.5424	5.77%	2.5424	5.77%	2.5424	5.77%	2.5424	5.77%

* 산업용2 요금은 월42.91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2와 4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 금년공급비용 2.5424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하단가(0.0207 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 금년공급비용 2.5424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0.8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 가정용 기본요금을 전국 평균수준인 866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4.96%)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 가정용 3.0342원(동결), 수송용 0.4906원(동결)으로 확정 후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2.35%)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대화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취사용	3,745	2.0121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개별난방용	1,801,427	2.0121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중앙난방용	91,180	2.0121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2.0121	0.00%
영업용1	174,439	1.9598	1.9598	0.00%	1.9598	0.00%	1.9298	-1.53%	1.9599	0.00%
영업용2	189,334	1.9635	1.9635	0.00%	1.9635	0.00%	1.9335	-1.53%	1.9636	0.00%
업무난방용	152,225	1.9635	1.9635	0.00%	1.9635	0.00%	1.9335	-1.53%	1.9636	0.00%
냉난방공조용	130,614	1.3375	1.3375	0.00%	1.3375	0.00%	1.3170	-1.53%	1.3375	0.00%
산업용1	3,068,991	1.4069	1.4069	0.00%	1.4069	0.00%	1.3854	-1.53%	1.4069	0.00%
산업용2	-	1.1685	1.1685	0.00%	1.1685	0.00%	1.1506	-1.53%	1.1685	0.00%
열병합용	34,698	1.4005	1.4005	0.00%	1.4005	0.00%	1.3791	-1.53%	1.4005	0.00%
열전용설비	22,730	1.4005	1.4005	0.00%	1.4005	0.00%	1.3791	-1.53%	1.4005	0.00%
수송용	357,616	0.4906	0.4906	0.01%	0.4906	0.00%	0.4831	-1.53%	0.4906	0.00%
합계	6,027,000	1.6702	1.7064	2.17%	1.7064	2.17%	1.7064	2.17%	1.7064	2.17%

* 산업용2 요금은 월128.73 TJ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2와 4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 금년공급비용 1.7064원은 용도별 추정열량에 각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결함으로써 산출되었습니다.

대안2 : 금년공급비용 1.7064원은 동일비율 대안에서도 각 용도별 공급비용이 기존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안1 결과와 동일합니다.

대안3 : 가정용 기본요금을 전국 평균수준인 866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1.53%)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 가정용 및 수송용 동결 대안에서도 각 용도별 공급비용이 기존과 동일하여, 대안1 결과와 동일합니다.

- 전남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취사용	12,754	3.0342	3.0617	0.91%	3.0729	1.27%	3.0342	0.00%	3.0342	0.00%
개별난방용	2,769,499	3.0342	3.0617	0.91%	3.0729	1.27%	3.0342	0.00%	3.0342	0.00%
영업용1	381,404	3.3428	3.3703	0.82%	3.3854	1.27%	3.3717	0.87%	3.4177	2.24%
영업용2	72,782	3.2217	3.2492	0.85%	3.2627	1.27%	3.2496	0.87%	3.2939	2.24%
업무난방용	137,104	3.3571	3.3846	0.82%	3.3999	1.27%	3.3861	0.87%	3.4323	2.24%
냉난방공조용	123,656	1.8225	1.8500	1.51%	1.8457	1.27%	1.8383	0.87%	1.8633	2.24%
산업용1	1,418,026	1.9616	1.9891	1.40%	1.9866	1.27%	1.9786	0.87%	2.0056	2.24%
산업용2	634,536	1.7476	1.7751	1.57%	1.7699	1.27%	1.7627	0.87%	1.7868	2.24%
산업용3	3,379,079	1.5477	1.5752	1.78%	1.5674	1.27%	1.5611	0.87%	1.5824	2.24%
수송용	297,855	0.4906	0.5181	5.60%	0.4969	1.27%	0.4948	0.87%	0.4906	0.00%
합계	9,226,695	2.3535	2.3189	-1.47%	2.3189	-1.47%	2.3189	-1.47%	2.3189	-1.47%

* 산업용2 요금은 월42.91 TJ 초과 128.73 TJ 이하 사용시, 산업용3 요금은 월 128.73 TJ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2와 4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 금년공급비용 2.3189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상단가(0.0275 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 금년공급비용 2.3189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1.27%)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 가정용 기본요금을 전국 평균수준인 866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0.87%)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 가정용 3.0342원(동결), 수송용 0.4906원(동결)으로 확정 후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2.24%)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해양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 가격의 조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 (GJ)	현행 공급비용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공급비용	조정율
개별 난방용	1,087,542	3.0342	2.9970	-1.23%	2.9881	-1.52%	3.034	0.00%	3.0342	0.00%
영업용1	200,872	4.4292	4.3920	-0.84%	4.3620	-1.52%	4.304	-2.84%	4.3227	-2.40%
영업용2	30,713	3.4060	3.3688	-1.09%	3.3543	-1.52%	3.309	-2.84%	3.3241	-2.40%
업무난방용	160,461	3.8703	3.8331	-0.96%	3.8115	-1.52%	3.761	-2.84%	3.7772	-2.40%
냉난방공조용	37,822	1.8073	1.7701	-2.06%	1.7799	-1.52%	1.756	-2.84%	1.7638	-2.40%
산업용1	1,968,560	2.2492	2.2120	-1.65%	2.2151	-1.52%	2.185	-2.84%	2.1951	-2.40%
산업용2	765,918	1.5744	1.5372	-2.36%	1.5505	-1.52%	1.530	-2.84%	1.5365	-2.40%
열병합용	655	1.9363	1.8991	-1.92%	1.9069	-1.52%	1.881	-2.84%	1.8897	-2.40%
열전용설비	289,756	3.0342	2.9970	-1.23%	2.9881	-1.52%	2.948	-2.84%	3.0342	0.00%
수송용	191,827	0.4906	0.4534	-7.58%	0.4832	-1.52%	0.477	-2.84%	0.4906	0.00%
합계	4,734,126	2.3732	2.5117	5.84%	2.5117	5.84%	2.512	5.84%	2.5117	5.84%

* 산업용2 요금은 월42.91 TJ 초과 사용시 적용됩니다.

소비자 가격 조정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산출하였고 대안2와 4를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안1 : 금년공급비용 2.5117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인하단가(0.0372 원)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2 : 금년공급비용 2.5117원을 각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1.52%)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3 : 가정용 기본요금을 전국 평균수준인 866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을 동일한 비율(2.84%)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대안4 : 가정용 3.0342원(동결), 수송용 0.4906원(동결)으로 확정 후 기타 용도별 공급비용에 동일한 비율(2.40%)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단, 열전용설비는 타 연료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정용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V.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전라남도에서 제시한 중점검토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용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4조 3항 1호에 따라 산정된 가정용 기본요금 산정내역과 현행기본요금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공급관 감가상각비	754,164	394,742	571,654	324,549
검침비	300,562	170,638	352,425	243,110
송달비	161,644	100,579	68,860	58,199
고지서발행비	43,032	127,332	75,157	10,607
지로수수료	114,212	74,629	130,795	40,942
안전점검비	272,709	217,976	342,172	489,194
계량기교체비	186,527	255,027	669,751	141,595
합계	1,832,850	1,340,923	2,210,814	1,308,196
수용가수(세대)	112,143	79,058	137,102	51,656
기본요금 산정액(원)	1,362	1,413	1,344	2,110
현재 기본요금(원)	770	770	770	770
현재요금 대비 수준	177%	184%	175%	274%

현재 적용되는 기본요금 대비 산정된 요금 수준은 각 사별로 최저 175% ~ 최고 274%로 4개사 모두 현재 기본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전국 가정용 기본요금 및 평균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지 역	공급회사	기본요금	평균공급비용	총공급물량(GJ)
서울특별시	서울5사	1,000	1.5216	179,567,075
경기도	삼천리 외	850	1.5620	205,315,131

인천광역시	인천 외	840	1.4288	60,120,403
부산광역시	부산	850	1.9965	56,011,588
대구광역시	대성	775	2.1600	40,044,539
광주광역시	해양	750	2.0323	24,393,264
대전광역시	충남	820	2.4645	26,574,144
울산광역시	경동	778	1.0243	69,949,029
세종특별자치시	중부	760	2.0871	3,308,655
강원 춘천시	강원	950	3.1374	5,478,342
강원 원주시	참빛원주	950	2.7510	5,504,363
강원 영동지역	참빛영동,속초	950	4.9393	2,131,422
충북 청주시	충청ES	1,060	2.0196	25,936,590
충북 충주시	참빛충북	1,825	2.1580	4,384,596
충남 천안시	중부	760	1.9255	33,369,690
충남 서산시	서해	760	1.4655	20,245,917
전북 전주시	전북	750	1.9441	16,729,632
전북 군산시	군산	750	1.5485	12,852,431
전북 익산시	전북ES	750	2.8100	5,721,155
전남 목포시	목포	770	2.4036	4,863,600
전남 순천시	전남	770	2.3535	8,558,652
전남 여주시	대화	770	2.3801	5,627,681
전남 나주시	해양	770	2.3732	4,475,838
경북 구미시	영남ES	750	2.1894	20,910,240
경북 포항시	영남ES	750	2.1121	17,842,671
경북 경주시	서라벌	810	2.2339	4,965,788
경북 안동시	대성청정E	750	2.7800	7,440,965
경남 창원시	경남	850	2.3999	38,198,490
경남 진주시	지에스이	1,100	2.9202	6,109,308
평균		863	2.2456	31,607,972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상기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역의 기본요금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기본요금의 단순평균인 863원보다 93원이 낮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들의 경우 인구수와 인구집적도가 높아 보급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적인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인상 필요성이 없지만, 인구집적도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방의 경우 보급률 증대를 위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성 확보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 평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기본요금이 전국 기본요금 평균 863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산악지형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강원도와 유사한 보급률을 나타내는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기본요금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 고
서울특별시	1,000	96.5%	4,042,051	4,189,948	
경기도	850	85.7%	4,188,887	4,885,012	
인천광역시	840	90.3%	1,042,413	1,154,004	
수도권 소계		90.7%	9,273,351	10,228,964	
부산광역시	850	85.4%	1,228,017	1,437,818	
대구광역시	775	90.7%	891,117	982,360	
광주광역시	750	95.8%	555,852	580,427	
대전광역시	820	93.2%	556,299	597,008	
울산광역시	778	90.7%	409,472	451,688	
세종특별자치시	760	79.1%	64,678	81,806	
강원도	950	41.3%	282,877	685,005	
충청북도	1,060	63.5%	425,023	669,503	
충청남도	760	57.7%	511,558	885,968	
전라북도	750	64.1%	502,263	782,986	
전라남도	770	42.9%	357,704	833,901	

경상북도	750	57.4%	671,035	1,169,648	
경상남도	750	61.4%	839,996	1,367,142	
제주특별자치도		8.0%	20,607	256,928	
지방소계		67.7%	7,295,891	10,782,188	
전국합계	826	78.9%	16,569,242	21,011,152	

상기 자료에서 전체 세대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요가수는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상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내륙과 달리 LPG+Air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라남도 전체의 가정용 수요가수는 총 357,704 세대로 기본요금 1원의 증가는 총 공급비용의 회수에 있어 연간 4,292천원(=357,704 세대 x 1원 x 12개월)의 증가에 불과하며, 전라남도 가정용 수요가 중 월 사용량이 없어 기본요금만을 부담하는 세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가정용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가의 요금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전국 최하위 보급률 수준인 전라남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770원인 기본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가능하며,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발생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사용량 요금의 인상폭을 낮추는 한편 전국 최저 수준의 보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독려하는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에너지 사용 편리성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2. 신규 공급지역(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용도별 공급비용 산정 대안제시

2015년 신규 공급권역은 목포도시가스의 경우 강진군, 전남도시가스의 경우 구례군,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의 경우 장흥군 지역을 공급하였습니다.

신규 공급지역에 대한 별도 요금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투자비와 발생원가가 구분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증분(marginal) 개념에 따라 기존 공급권역 외에 신규 공급권역 공급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공급지역의 경우 배관 투자비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발생원가는 신규 공급 초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후 충분한 수요 증가가 있을 때 인력 총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과 자원에 대한 합리적 배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통 배관이나 공급시설 역시 합리적 배부기준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규 권역 추가 시 마다 기본적인 인력과 자원은 소요되는데 반해 초기 판매량은 적을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일 사업자가 인접한 지역에 대해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의 추가적 민원만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공급비용 단일화 계획 관련 단일요금 적용 시 적정요금과 조정효과 등 분석

2016년 용도별 요금으로 대안4(취사난방용 동결안)를 적용할 경우 가정용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MJ)

구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취사난방용	3.0342	3.0342	2.0121	2.0121	3.0342	3.0342	3.0342	3.0342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대화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가정용 요금을 일치시켜 왔습니다.

만약, 2016년 대화도시가스의 가정용 요금을 나머지 3개사의 요금과 일치시킬 경우 대화도시가스의 예상 용도별 공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GJ, 원/MJ)

구분	열량(GJ)	2015년 공급비용	2016년 공급비용	증감액	증감율
취사용	3,745	2.0121	3.0342	1.0221	50.8%
개별난방용	1,801,427	2.0121	3.0342	1.0221	50.8%
중앙난방용	91,180	2.0121	3.0342	1.0221	50.8%
영업용1	174,439	1.9598	1.2798	-0.6800	-34.7%
영업용2	189,334	1.9635	1.2822	-0.6813	-34.7%
업무난방용	152,225	1.9635	1.2822	-0.6813	-34.7%

냉난방공조용	130,614	1.3375	0.8734	-0.4641	-34.7%
산업용1	3,068,991	1.4069	0.9187	-0.4882	-34.7%
산업용2	-	1.1685	0.7630	-0.4055	-34.7%
열병합용	34,698	1.4005	0.9145	-0.4860	-34.7%
열전용설비	22,730	1.4005	0.9145	-0.4860	-34.7%
수송용	357,616	0.4906	0.4906	-	-%
합계	6,027,000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대화도시가스의 가정용 요금을 타 도시가스사에 적용되는 요금인 3.0342원으로 일치시킬 경우 2015년 가정용 요금인 2.0121원에서 1.0221원 증가하여 50.8%가 인상되는 반면, 오히려 다른 용도별 요금은 2015년 대비 34.7%가 인하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지역 가정용의 단일요금 적용은 타 지역의 평균 공급비용 인하시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요금을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15년 전국 용도별 공급비용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지역별 특성 분석

(단위: 원)

지역	주택용			업무 난방	일반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열병합	열병합	열전용 설비용	수송용
	취사용	개별	중양		영업1	영업2			1	2		
서울	1.1435	1.1435	1.1435	1.409	2.4107	1.409	0.9214	0.7084	0.6075	0.6075	0.9646	0.6797
경기	1.4968	1.4633	1.4633	1.7039	2.7158	1.7039	1.0329	1.0423	1.0423	1.0423	1.2116	0.6421
인천	1.4426	1.4781	1.4781	1.7074	2.8272	1.7074	1.0556	0.8346	1.0556	1.2007	1.2007	0.5760
부산	1.0096	2.6078	2.3115	2.9215	2.9631	1.993	2.3333	1.1761	1.7783	0.8899	0.8899	0.5583
대구	1.4863	2.5856	2.265	3.0419	3.0992	3.0419	1.9292	1.1326	2.265	2.265	2.265	0.8155
광주	1.0794	2.2856	2.2856	2.2208	2.7984	1.9069	0.9926	0.9926	0.6653	1.5656	2.3069	2.4654
대전	1.3147	2.9136	2.4455	3.1934	3.5909	3.1328	1.4919	1.1497	1.906	1.4332	2.1288	2.5546
울산	1.1017	1.8153	1.8558	2.056	2.0767	1.4722	0.6998	0.3905	1.359			2.4344
세종	0.8728	2.1793	1.8976	2.3727	2.7647	2.3727	1.3255	1.3255			1.6461	
춘천	3.2131	3.2131	3.4995	3.644	3.5399	3.6124	3.0552	2.3772	3.4995	3.4995		2.9803

원주	2.7979	2.7979	3.0227	3.3878	3.0394	3.0266	2.6972	2.1906	3.0227	3.0227		2.9803
강릉	4.7555	4.7555	4.5998	4.5651	4.7221	4.1894	4.1156	4.1847				2.9803
청주	2.2133	2.2133	1.8903	2.5427	2.1572	2.1572	1.6572	1.9567	1.8903	1.0414		0.5935
충주	2.4462	2.4462	2.3453	2.2226	2.7071	2.7071	1.4693	1.4939	2.3509			
천안	1.0339	2.5818	2.2484	2.811	3.2754	2.811	1.5704	1.5704	1.9503	0.7367	1.9503	2.4785
서산	1.3671	2.6366	2.1319	2.8037	3.0147	3.0147	1.3288	1.0714	1.733	0.5994	1.733	2.4785
전주	2.0573	2.0573	1.798	2.2542	2.2542	2.2542	1.294	1.294	1.7992	1.7992	1.7992	0.5837
군산	2.3458	2.3458	2.3458	2.927	2.927	2.927	1.643	1.218	2.4947	2.4947	2.5334	2.5429
익산	3.0697	3.0697	3.0697	3.5166	3.5166	3.5166	3.1345	1.1404	3.1913	3.1913	3.3929	2.5429
목포	3.0342	3.0342	3.0342	2.9392	3.4474	3.3812	1.6327	0.9572	2.9593			0.4906
순천	3.0342	3.0342	3.0342	3.3571	3.3428	3.2217	1.8225	1.7523				0.4906
여수	2.0121	2.0121	2.0121	1.9635	1.9598	1.9635	1.3375	1.2877	1.4005		1.4005	0.4906
나주	3.0342	3.0342	3.0342	3.8703	4.4292	3.406	1.8073	2.2492	1.9363		3.0342	0.4906
구미	2.5427	2.4891	2.4891	2.7427	2.7296	2.7296	1.856	1.5056	2.6424	2.5488	1.8838	2.5387
포항	2.6324	2.4753	2.4753	2.952	2.9679	2.9679	1.9576	1.1459	2.7269		2.7269	2.5387
경주	2.8052	2.523	2.523	2.8552	2.8356	2.8356	1.7216	1.4628				2.5387
안동	3.703	3.4735	3.4735	3.7544	3.1104	3.1104	2.7429	2.4092	2.7994			
창원	2.7638	2.7638	2.6434	2.9954	2.9713	2.507	1.7988	1.5338	2.2006		1.4261	0.868
진주	3.1214	3.1214	3.1214	3.9308	4.2708	3.6196	2.9533	2.9049	2.9706	1.1233	3.9308	0.7242
평균	2.2390	2.5707	2.4806	2.8504	3.0505	2.7137	1.8406	1.5330	2.0899	1.7095	2.0224	1.6176
표준편차	0.9658	0.6933	0.7179	0.7414	0.6498	0.7093	0.7804	0.7589	0.7885	0.9493	0.8242	1.0357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가. 2015년 지역별 배관길이당 공급열량 및 산업용 열량비율 비교

지 역	배관길이(m)	총공급열량(MJ)	산업용열량(MJ)	1m당 공급열량(MJ)	산업용 열량비율
수도권	19,063,068	445,002,609	84,074,986	23.34	18.89%
기타광역시	9,687,557	220,281,219	92,983,705	22.74	42.21%
강원	992,447	13,114,127	2,043,614	13.21	15.58%

충북	1,254,208	30,321,186	18,107,312	24.18	59.72%
충남	1,865,594	54,293,873	35,555,116	29.10	65.49%
전북	1,879,872	35,303,218	17,534,459	18.78	49.67%
전남	1,436,393	23,525,771	11,971,419	16.38	50.89%
경북	2,259,403	56,984,751	33,385,695	25.22	58.59%
경남	2,675,739	51,695,285	23,922,947	19.32	46.28%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기 자료에 따르면, 생산성 지표에 해당하는 공급배관 1m당 공급열량은 강원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산업용 공급열량 비중(총공급열량 대비 15.58%)이 매우 적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급배관 1m당 공급열량은 전남지역 보다 약 42.49% 많으나 산업용 열량비율은 32.0%p 적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배관효율이 높고, 총공급열량이 전남지역 공급열량의 약 18.91배에 달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의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은 전남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2015년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별 배관길이당 공급열량 및 산업용 열량비를 비교

지 역	배관길이(m)	총공급열량(MJ)	산업용열량(MJ)	1m당 공급열량(MJ)	산업용 열량비율
목포	352,656	4,863,600	1,500,856	13.79	30.86%
대화	265,265	5,627,681	3,023,883	21.22	53.73%
전남	378,061	8,558,652	4,572,550	22.64	53.43%
해양	440,411	4,475,838	2,874,130	10.16	64.21%

세부적으로 전남지역을 살펴보면, 산업용 열량비율은 목포가 30.86%로 가장 낮으며, 이로 인하여 목포 가정용과 산업용 공급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용도별 공급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관 1m당 공급열량은 해양이 10.16MJ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화순,장성,영광,담양,해남,함평 등 군 단위 공급권역의 확대로 공급권역내 수요가의 밀집도와 보급률이 높지 않음에 따라 배관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 배관 1m당 공급열량이 많은 회사는 전남과 대화도시가스로 각각 22.64 MJ 와 21.22MJ 수준이며 이는 공급배관의 생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화도시가스의 결과는 여수지역 공급권역 내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용 열량비중이 53.73%로 가장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용도별 공급단가도 4개사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비중이 높은 것이 반드시 선호할 만한 결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산업용 물량의 변동폭에 따라 단기적으로 타 용도 요금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인하로 인해 도시가스의 대체연료에 해당하는 벙커씨유 (BC유)단가도 인하되면서 대규모 사용처인 산업체 중 이중보일러(Dual boiler)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도시가스에서 벙커씨유(BC유)로의 대체가 대규모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업체 비중이 높은 지역인 울산, 구미 등의 경우 평균공급비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용과 가정용을 비교하면, 수요가수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가정용이 가장 높고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수요가당 사용량을 놓고 보면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용 비중이 높을수록 도시가스 총공급비용을 산업용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가정용 수요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단기적으로 산업용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가정용 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전라남도의 낮은 보급률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가인하로 인한 산업용 사용량 감소와 같은 요금 인상 상황에선 향후 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상요인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 중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 반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수요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과 평균 공급비용 산정 (대안 4)

도내 공급여건 최적화를 위한 용도별 적정 공급비용 최소 편차(최고~최저) 범위 및 용도, 회사별 평균 공급비용 산정내역은 용도별 요금 대안4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공급비용					회사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평균	MAX	MIN	최대편차
취사용	3.0342	2.0121	3.0342	3.0342	2.7787	3.0342	2.0121	1.0221
영업용1	3.3664	1.9599	3.4177	4.3227	3.2667	4.3227	1.9599	2.3628
영업용2	3.3017	1.9636	3.2939	3.3241	2.9708	3.3241	1.9636	1.3605
업무난방용	2.8701	1.9636	3.4323	3.7772	3.0108	3.7772	1.9636	1.8136
냉난방공조용	1.5943	1.3375	1.8633	1.7638	1.6397	1.8633	1.3375	0.5258
산업용1	1.4133	1.4069	2.0056	2.1951	1.7552	2.1951	1.4069	0.7882
산업용2	0.4560	1.1685	1.7868	1.5365	1.2370	1.7868	0.4560	1.3308
산업용3	-	-	1.5824	-	1.5824	1.5824	1.5824	-
열병합용	2.8897	1.4005	-	1.8897	2.0600	2.8897	1.4005	1.4892
열전용설비	-	1.4005	-	3.0342	2.2174	3.0342	1.4005	1.6337
수송용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0.4906	-
평균	2.5424	1.7064	2.3189	2.5117	2.2699	2.5424	1.7064	0.8360
MAX	3.3664	2.0121	3.4323	4.3227	3.2667			
MIN	0.4560	0.4906	0.4906	0.4906	0.4906			
최대편차	2.9104	1.5215	2.9417	3.8321	2.7761			

가. 목포도시가스

회사의 전년도 승인공급열량 대비 실제공급열량이 399 TJ 만큼 미달하여 정산기준 3%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 총 90백만원과 기 발생한 열량정산 금액 205백만원을 합하여 당기에 295백만원을 공급비용에 가산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규공급권역 확대에 의한 투자비 증가가 반영되고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상승 효과로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가정용의 경우 대화도시가스를 제외한 3사 동일가격 정책유지를 위해 동결하고 수송용의 경우도 동결하였으며, 기타 용도에 평균공급비용 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는 바, 평균공급비용이 인상하였음에도 가정용 판매량이 전기 승인대비 증가하고 산업용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별 공급비용을 다소 인하하였습니다.

나. 대화도시가스

회사의 2016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646 TJ 만큼 감소(9.7%)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기 발생한 열량정산 이연금액의 일부와 전년도 실제공급열량이 승인공급열량에 미달하여 열량정산 금액이 발생하여 공급비용에 가산 반영되었으며,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보급확대와 기존 산업용 열량(듀얼보일러 사용)의 큰 변동폭에 따른 공급비용 산정 시 과도한 편차 발생의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투자재원 2,317백만원을 반영하여 단위당 평균 공급비용은 전년대비 인하 수준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평균공급비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판매량이 전기 승인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정용 및 수송용을 포함한 전체 용도별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다. 전남도시가스

회사의 2016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317 TJ 만큼 증가(9.3%)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신규공급권역 확대에 의한 투자비 증가가 반영되고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열량 보다 큰 증가영향으로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공급비용을 인하하였으나, 전기 승인대비 공급열량의 증가가 대부분 산업용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별 공급비용을 다소 인상(가정용 및 수송용은 동결)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당기 보성군 및 고흥군을 신규 공급 지역으로 추가하여 공급비용이 산정되었고 기존 공급지역과 동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라. 해양도시가스

회사의 2016년 예정공급열량은 전년 승인공급열량 대비 136 TJ 만큼 증가(3.0%)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공급지역 확대에 따른 투자비의 증가로 투자보수가 증가하였으며 신규 공급권역의 증가로 감가상각비와 기타경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요금기저에 대한 투자보수를 상승 영향으로 단위당 평균공급비용은 전년대비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공급비용을 인상하였으나, 전기 승인대비 공급열량의 증가가 대부분 가정용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별 공급비용을 다소 인하(가정용, 열전용설비용 및 수송용은 동결)하였습니다.

6. 시설분담금 미시행에 따른 가정용과 취사전용의 교차보조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나주 빚가람혁신도시의 경우 도시가스는 취사전용 목적으로 공급되고 소요량이 많은 난방용은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관로공사 등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되고 동 투자비는 나주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되어 요금 인상으로 나타나지만, 동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대상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자와 구분되지 않고 공급비용에 일괄 적용될 경우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에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빚가람혁신도시 지역의 신규 수요가에 대해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은 등급당 355,300원(개별 세대의 경우 2.5등급을 적용하므로 888,250원)으로 산정되어 고시되었으며, 가스 최초 공급 시 수요가에서 부담합니다.

※참고자료 - 주요 광역시 취사전용시설부담금

(단위: m³/h)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평균
78,690	90,823	110,017	103,251	121,770	123,662	(*)	104,702

(*)울산은 개별산정 방식으로 적용됨.

7. 여수지역 배관 투자재원 관련 검토

가. 여수시 산업용 열량 정산분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

산업용 열량 정산분과 관련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재원과 실제 투자된 내

역에 대한 세대당 및 배관 1m당 소요된 표본 공사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투자년도는 투자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 2009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11통	133,383	144,148	742	194	131	1,100
신기9,10통	426,617	460,432	2,687	171	437	1,054
미평 양지마을	111,389	119,234	592	201	103	1,158
여서동 2통	433,052	460,077	2,375	194	339	1,357
계	1,104,441	1,183,891	6,396	185	1,010	1,172

2) 2010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3통,4통	191,697	236,417	1,562	151	192	1,231

3) 2011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여서동 1통	112,465	136,102	630	216	115	1,183
선원동25통	306,573	354,415	1,786	198	232	1,528
미평 양지초등	89,739	99,733	334	299	66	1,511
계	508,777	590,250	2,750	215	413	1,429

4) 2012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미평 양지초등	49,122	54,653	183	299	36	1,518
화장동 36통	446,880	528,540	2,750	192	140	3,775
엑스포 및 숙소	725,693	903,773	4,390	206	1,523	593

신기21,22통	463,431	592,780	2,994	198	430	1,379
웅천3,4단지	461,466	488,336	1,545	316	129	3,786
계	2,146,592	2,568,082	11,862	216	2,258	1,137

5) 2013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오림동15통	343,530	464,629	2,282	204	307	1,513
안산동29통	316,941	416,374	1,781	234	162	2,570
미평동20통	283,857	382,222	1,749	219	479	798
안산동30,31,32통	828,037	1,129,042	5,346	211	623	1,812
문수동1통	118,007	156,730	694	226	130	1,206
웅천4,5단지	231,283	271,150	1,126	241	51	5,317
계	2,121,655	2,820,147	12,978	217	1,752	1,610

6) 2014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문수동 소미마을	59,354	83,983	640	131	107	785
선원동24,25통	409,508	546,192	2,893	189	438	1,247
학동20통	176,412	225,272	1,127	200	136	1,656
신기동19,20통	402,756	576,109	2,900	199	337	1,710
여천동6통	293,271	424,041	2,197	193	151	2,808
교동11통	76,456	97,031	325	299	49	1,980
신기동23,24통	203,859	337,369	1,792	188	304	1,110
학동6,7,8통	465,735	644,732	3,320	194	296	2,178
계	2,087,351	2,934,729	15,194	193	1,818	1,614

7) 2015년

(단위: 천원)

구간	투자자원	공사금액	배관길이 (m)	m당 평균	세대수	세대당 평균
학동6,7,8통	92,979	129,256	666	194	59	2,191
학동17통	211,362	279,102	1,257	222	130	2,147
여천동1통(1월)	215,683	291,043	1,473	198	130	2,239
학동22통(3월)	612,699	764,231	3,565	214	461	1,658
여천동24,25통(3월)	364,602	443,687	2,022	219	185	2,398
학동5통(3월),6월	200,808	243,368	1,017	239	70	3,477
국동6,7,8통(5월)	637,620	1,030,024	4,691	220	502	2,052
문수동3통(3월)	154,275	207,184	875	237	103	2,011
문수동1통(5월)	168,527	195,912	704	278	71	2,759
화장동10통(6월)	440,438	564,643	2,731	207	243	2,324
화장동26통(무선2차 앞)-6월	478,718	589,455	2,606	226	185	3,186
화장동26통(안전공사 앞)-8월	626,015	742,285	3,796	196	448	1,657
화장동10통,36통(8월)	748,272	944,213	4,628	204	518	1,823
화장동27통(9월)	673,396	838,983	4,312	195	312	2,689
화장동9통(10월)	619,933	804,066	4,525	178	333	2,415
신기동8통,33통(10월)	505,508	634,194	2,555	248	277	2,290
교동 11통(10월)	11,531	34,636	43	805	51	679
서강동 7통(11월)	252,235	294,277	1,121	263	83	3,546
선경1차인근주택(11월)	177,215	208,031	1,018	204	188	1,107
계	7,191,816	9,238,590	43,605	212	4,349	2,124

나. 기타 사항

배관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연도별 공사내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회사에서 제시한 향후 계획은 금년에 선원동 4통, 한려동 1통, 2통, 소호동 35통, 문수동 1통 등입니다. 회사는 투자재원을 활용한 도심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관투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투자 계획과 공사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가스 연결·철거비 폐지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산정기준 제2조 제7항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2013.06.05개정)’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철거비의 경우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별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가스 연결 시에는 관련 재료비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변경을 반영하여 연결 시 별도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 할 경우 공급비용 인상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3개년 전입 세대수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비고
2013년	20,945	4,183	24,758	9,016	
2014년	25,789	4,262	27,861	11,258	
2015년	24,323	4,293	30,798	12,929	

나. 공급비용 산정 시 미반영된 전입시 안전점검비용과 인상효과

(단위: 원)

구 분	전입세대수	수수료단가	수수료금액	인정공급열량 (GJ)	단위당공급비용 인상효과
목포	24,323	5,000	121,615,000	5,152,811	0.0236
대화	4,293	5,000	21,465,000	6,027,000	0.0036
전남	30,798	5,000	153,990,000	9,226,696	0.0167
해양	12,929	5,000	64,645,000	4,734,126	0.0137

공급기준 개정의 취지에 따라 유추해보면 이사 및 가스기기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공급비용에 포함시키고 실제 발생 시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징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공급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사 다니는 빈도가 낮은 수요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교체 시 안전점검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과 방식에 대한 검토(현재 방식 대 공급비용 포함)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용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 5항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4개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센터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고객센터수	1개소	1개소	2개소	8개소
총근무인원	41명	30명	54명	35명
수수료산정방식	건별표준비용	건별표준비용	총괄원가보상	건별표준비용
2015년 지급수수료	928,183	764,525	1,778,853	922,518
2016년 수수료반영액	971,728	807,749	2,031,169	1,105,443
인정공급물량(GJ)	5,152,811	6,027,000	9,226,696	4,734,126
공급비용반영액(원)	0.1886	0.1340	0.2201	0.2335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방식으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라남도시가스를 제외한 3개사의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원가자료를 근거로 별도로 서비스센터 원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나 각사의 경우 해당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산출에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공급비용 산정시에는 현행 체제에서 각 서비스 항목별로 약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수수료 금액에 대해 검토 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도시가스회사별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산출된 고객센터 수수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산출된 단가를 기준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타 시·도별 우수사례 소개, 현황 비교·분석 등

가. 타 시·도 산업용 2부제 운영실태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산업용은 가정용과 함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도시가스 4개사의 경우 산업용 열량이 전체 공급열량에서 약 31%~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처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비 소요액에 비해 가스판매량이 크기 때문에 공급배관의 생산성이 높아 산업용 열량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평균 공급비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등 대규모 수요처가 존재할 경우 공급비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타 용도별 요금도 함께 인하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용 요금은 타 용도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열량의 비중 확대를 위해 사용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이하 “대량수요처”)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더 낮은 요금(산업용 2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처의 경우 타 연료와 경제성을 평가하여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원가경쟁력이 확보되어야만 경쟁 에너지원과의 가격 비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의 산업용 2부제 요금은 이러한 경제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용 2부제 요금 적용 시 타 용도별 요금의 추가적인 공급비용 인상 없이 산업용 열량의 증가에 의한 초과수익 범위 내에서 산업용 2부제 요금의 수준은 결정되어야 하며, 타 용도별 요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용 요금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산업용 2부제 요금 현황

산업용 2부제 요금은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목포	대화	전남	해양
산업용1	42.91TJ 이하	128.73TJ 이하	42.91TJ 이하	42.91TJ 이하
산업용2	42.91TJ 초과	128.73TJ 초과	42.91~128.73TJ	42.91TJ 초과
산업용3	-	-	128.73TJ 초과	-

2) 산업용 2부제 요금 조정 및 단일화 검토

2016년 공급비용 산정 결과 대안4의 경우 대화 및 전남도시가스를 제외한 도시가스 2개사가 용도별 요금이 소규모 인하 수준에서 산정되었으며, 산업용 2부제 요금 역시 전기대비 용도별 요금 중 동일한 증감비율에서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부제 요금이 타 용도의 공급비용을 인상시키는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시가스 4개사의 산업용 2부제 요금 수준은 다른데, 이는 각 지역별로 산업체의 구성과 사용량 수준에 개별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내 산업용 2부제 요금을 단일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타 용도별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존 요금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산업용 공급비용의 블랙제 시행

산업용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급열량의 급격한 감소가 적고 실물 경기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비용 인하요인을 현행 산업용 2부제에서는 요금부과 월 기준사용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하효과에 대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준 사용량을 더욱 세분화하여 산업체 생산원가 절감, 요금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체 요금체계를 현행 2부제 요금제에서 요금변동의 기여도를 고려한 '블랙체감 요금제'로 개선한 것은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1. 경제성이 낮은 도시 내 주택지역 시설투자 확대방안

전라남도의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현재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원도심이나 낙후지역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지역도시가스사의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역도시가스사간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관투자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관 투자의 초기에는 1m당 공급받는 수요가 수와 공급량은 적지만 배관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공급비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간이 경과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량의 증가가 수반되어 평균공급비용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 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경우도 이를 근거로 투자재원의 부가를 통한 배관투자의 확대를 2009년부터 대화도시가스(여수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목포도시가스(목포시 등)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도시가스사의 자체자금 및 조달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관투자를 위하여 배관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가설하는 수요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관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시설분담금 증가나 투자재원을 통한 투자비 유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급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지침에 대한 의견 및 대안제시

본 용역 수행결과 대안4의 경우 대화도시가스는 동결, 전남도시가스는 인하, 목포도시가스와 해양도시가스의 용도별 요금은 전년도 대비 인상수준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용도별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공급패턴이 변화거나 경제성이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신규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계획된 신규공급지역의 경우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투자대비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은 신규 공급권역에 대한 투자완료 시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는 경쟁연료인 등유, LPG, 전기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었으나, 최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산

업용에서는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정용의 경우는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급권역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

도시가스협회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 본 2014년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 현황에서 전라남도의 보급률은 42.9%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최하위 수준입니다.

(단위: 원, 세대)

지 역	보급률(%)	수요가수	전체 세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96.5%	4,042,051	4,189,948	
경기도	85.7%	4,188,887	4,885,012	
인천광역시	90.3%	1,042,413	1,154,004	
수도권 소계	90.7%	9,273,351	10,228,964	
부산광역시	85.4%	1,228,017	1,437,818	
대구광역시	90.7%	891,117	982,360	
광주광역시	95.8%	555,852	580,427	
대전광역시	93.2%	556,299	597,008	
울산광역시	90.7%	409,472	451,688	
세종특별자치시	79.1%	64,678	81,806	
강원도	41.3%	282,877	685,005	
충청북도	63.5%	425,023	669,503	
충청남도	57.7%	511,558	885,968	
전라북도	64.1%	502,263	782,986	
전라남도	42.9%	357,704	833,901	
경상북도	57.4%	671,035	1,169,648	
경상남도	61.4%	839,996	1,367,142	
제주특별자치도	8.0%	20,607	256,928	
지방소계	67.7%	7,295,891	10,782,188	
전국합계	78.9%	16,569,242	21,011,152	

전라남도는 지리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넓고 서남해안 인근의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라남도내 미공급지역은 원도심 지역의 단독주택 단지나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 지역 등으로 경제성이 낮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공급권역 확대는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이 되나 보일러유(등유)나 전기 등 대체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급률 확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비 감축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수요가의 시설분담금 현실화와 함께 점진적인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공급 확대에 의한 요금인상은 기존 수요가와 신규 수요가 사이에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보조금이나 투자재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격한 공급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비자의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방안

현재 전라남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가정용(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 비용을 공급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가스사별로 현재 발생하는 카드결제 건은 총공급비용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총괄원가의 인상에는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카드회사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건이 상당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의미 있는 공급비용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급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용-효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역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바, 도시가스사는 회사 개별 또는 협회차원에서 카드회사와 다각적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1.5%~2.0%)에 대해 건당 정액수수료(140원~200원) 체계로 전환 및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 부속명세서

- 목포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11,211,558	(1,862,713)	9,348,845	
급여	3,699,221	(713,022)	2,986,199	
퇴직급여	356,589	(59,301)	297,288	
감가상각비	2,767,336	(305,674)	2,461,662	
무형자산상각비	154,754	(26,000)	128,754	
복리후생비	377,187	(79,123)	298,064	
여비교통비	107,867	(3,486)	104,381	
통신비	77,807	(1,202)	76,605	
전력비	69,797	(1,283)	68,514	
소모품비	328,833	(4,182)	324,651	
세금과공과	452,702	(42,491)	410,211	
지급임차료	73,377	(13,307)	60,070	
지급수수료	1,591,934	(202,008)	1,389,926	고객센터비 포함
수선비	449,840	(149,827)	300,013	
차량유지비	102,386	(12,282)	90,104	
보험료	108,432	(1,392)	107,040	
접대비	79,247	(1,460)	77,787	
광고선전비	13,218	(5,248)	7,970	
운반비	104,003	(1,917)	102,086	
도서인쇄비	68,040	(14,409)	53,631	
교육훈련비	7,335	(4,089)	3,246	
대손상각비	220,000	(220,000)	-	
잡비	1,653	(1,012)	641	
(B) 영업외비용	211,909	(150,000)	61,909	
기부금	211,909	(150,000)	61,909	
(C) 영업외수익	35,575	(2,999)	32,576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231,064	-	231,064	
(E) 열량정산 반영금액	281,562	13,140	294,702	
(F) 법인세비용	776,574	(73,347)	703,227	
(G) 적정원가	12,677,092	(2,069,921)	10,607,171	A+B-C+D+E+F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11,211,558	(1,862,713)	9,348,845	
(B) 감가상각비	2,767,336	(305,674)	2,461,662	
(C) 퇴직급여	-	-	-	
(D) 대손상각 등	374,754	(246,000)	128,754	
(E) 운전자금	1,344,911	(218,507)	1,126,405	(A-B-C-D) X 2/12
(F) 유형자산	37,430,032	(4,338,635)	33,091,396	
(G) 무형자산	582,305	(142,000)	430,305	임차보증금 포함
(H) 요금기저	39,357,248	(4,699,142)	34,658,106	E+F+G
(I) 적정투자보수율	6.18%	1.01%	7.19%	
(J) 적정투자보수	2,432,409	60,850	2,493,259	H X I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목포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988,900	-	1,988,900	
(B) 당기순이익누계	35,754,663	-	35,754,663	
(C) 배당금지금액누계	2,981,200	-	2,981,200	
(D) 자기자본	34,762,363	-	34,762,363	A+B-C
(E) 타인자본적수	97,159,560	-	97,159,560	
(F) 월평균잔액	8,096,630	-	8,096,630	E/12
(G) 자기자본보수율	3.48%	1.25%	4.73%	
(H) 이자비용	203,194	-	203,194	
(I) 타인자본보수율	1.90%	-	1.90%	H/F X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3.18%	1.01%	4.19%	[(D X G)+(F X I)/(D+F)
(K) 투자보수율 가산비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6.18%	1.01%	7.19%	J+K

- 대화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6,951,422	(722,552)	6,228,870	
급여	3,521,456	(517,074)	3,004,382	
퇴직급여	288,653	(9)	288,644	
감가상각비	861,321	(84,778)	776,543	
무형자산상각비	-	-	-	
복리후생비	326,886	(5,317)	321,569	
여비교통비	6,900	(62)	6,838	
통신비	41,856	(370)	41,486	
전력비	10,679	(94)	10,585	
소모품비	118,840	(1,048)	117,792	
세금과공과	227,177	(8,860)	218,317	
지급수수료	1,265,292	(57,844)	1,207,448	고객센터비 포함
수선비	37,394	(330)	37,064	
차량유지비	88,451	(783)	87,668	
보험료	35,860	(316)	35,544	
접대비	18,895	(167)	18,728	
경조비	6,865	(61)	6,804	
도서인쇄비	37,497	(332)	37,165	
교육훈련비	4,459	(39)	4,420	
사무용품비	6,231	(54)	6,177	
대손상각비	45,000	(45,000)	-	
잡비	1,710	(15)	1,695	
(B) 영업외비용	60,360	-	60,360	
기부금	60,360	-	60,360	
(C) 영업외수익	31,776	(7,998)	23,778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252,194	(25,219)	226,975	
(E) 열량정산 반영금액	489,679	-	489,679	
(F) 법인세비용	244,194	(27,260)	216,934	
(G) 적정원가	7,966,073	(767,033)	7,199,040	A+B-C+D+E+F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6,951,422	(722,552)	6,228,870	
(B) 감가상각비	861,321	(84,778)	776,543	
(C) 퇴직급여	288,653	(9)	288,644	
(D) 대손상각 등	45,000	(45,000)	-	
(E) 운전자금	959,408	(98,794)	860,614	(A-B-C-D) X 2/12
(F) 유형자산	10,234,284	(1,146,895)	9,087,388	
(G) 무형자산	10,000	(5,000)	5,000	임차보증금 포함
(H) 요금기저	11,203,692	(1,250,690)	9,953,002	E+F+G
(I)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J) 적정투자보수	865,778	(96,648)	769,129	H X I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화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800,000	-	1,800,000	
(B) 당기순이익누계	48,320,912	-	48,320,912	
(C) 배당금지금액누계	30,710,416	-	30,710,416	
(D) 자기자본	19,410,496	-	19,410,496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73%	-	4.73%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0.00%	-	0.00%	H/F X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73%	-	4.73%	[(D X G)+(F X I)/(D+F)]
(K) 투자보수율 가산비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J+K

- 전남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20,418,327	(4,342,736)	16,075,591	
급여	5,275,623	(554,142)	4,721,481	
퇴직급여	333,312	-	333,312	
감가상각비	3,512,313	(115,968)	3,396,345	
무형자산상각비	114,252	-	114,252	
복리후생비	1,263,571	(82,721)	1,180,850	
여비교통비	106,862	(10,194)	96,668	
통신비	587,291	(327,804)	259,487	
수도광열비	104,991	(14,892)	90,099	
소모품비	117,273	(51,325)	65,948	
세금과공과	339,223	(42,351)	296,872	
지급임차료	162,628	(32,345)	130,283	
지급수수료	6,505,011	(1,998,196)	4,506,815	고객센터비 포함
수선비	742,156	(462,405)	279,751	
차량유지비	113,620	(13,862)	99,758	
보험료	26,671	(209)	26,462	
접대비	167,913	(16,018)	151,895	
광고선전비	32,475	(27,043)	5,432	
도서인쇄비	22,868	(3,822)	19,046	
교육훈련비	77,245	(37,594)	39,651	
회의비	16,890	(1,611)	15,279	
계량기 교체비	692,963	(462,595)	230,369	
대손상각비	86,000	(86,000)	-	
잡비	17,176	(1,640)	15,536	
(B) 영업외비용	213,000	(37,310)	175,690	
기부금	213,000	(37,310)	175,690	
(C) 영업외수익	-	-	-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716,732	(167,076)	549,656	
(E) 자연조정공급비용 차이	95,131	-	95,131	
(F) 법인세비용	1,159,404	(70,560)	1,088,843	
(G) 적정원가	22,602,594	(4,617,682)	17,984,911	A+B-C+D+E+F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20,418,327	(4,342,736)	16,075,591	
(B) 감가상각비	3,512,313	(115,968)	3,396,345	
(C) 퇴직급여	28,740	-	28,740	
(D) 대손상각 등	200,252	(86,000)	114,252	
(E) 운전자금	2,779,504	(690,128)	2,089,376	(A-B-C-D) X 2/12
(F) 유형자산	44,360,844	(2,194,878)	42,165,966	
(G) 무형자산	1,250,103	(60,000)	1,190,103	임차보증금 포함
(H) 요금기저	48,390,450	(2,945,006)	45,445,444	E+F+G
(I) 적정투자보수율	7.50%	-%	7.50%	
(J) 적정투자보수	3,631,520	(221,012)	3,410,509	H X I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12,684,000	-	12,684,000	
(B) 당기순이익누계	66,273,001	-	66,273,001	
(C) 배당금지급액누계	40,503,077	-	40,503,077	
(D) 자기자본	38,453,924	-	38,453,924	A+B-C
(E) 타인자본적수	57,381,664	-	57,381,664	
(F) 월평균잔액	4,781,805	-	4,781,805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73%	-	4.73%	
(H) 이자비용	171,047	-	171,047	
(I) 타인자본보수율	2.71%	-	2.71%	H/F X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50%	-	4.50%	[(D X G)+(F X I)/(D+F)]
(K) 투자보수율 가산비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50%	-	7.50%	J+K

- 해양도시가스

1. 적정원가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판관비	7,908,213	(514,304)	7,393,909	
급여	1,866,493	(129,102)	1,737,391	
퇴직급여	192,405	(32,473)	159,932	
감가상각비	2,859,338	(104,173)	2,755,165	
무형자산상각비	77,173	(10,192)	66,981	
복리후생비	472,207	(72,603)	399,604	
여비교통비	8,592	(675)	7,917	
통신비	90,044	(9,490)	80,554	
전력비	18,749	(2,054)	16,695	
소모품비	14,496	(1,367)	13,129	
세금과공과	261,036	(54,719)	206,317	
지급임차료	48,098	(5,495)	42,603	
지급수수료	270,891	(12,292)	258,599	
수선비	62,587	(4,579)	58,008	
차량유지비	167,766	(7,540)	160,226	
보험료	14,049	(442)	13,607	
접대비	46,675	513	47,188	
광고선전비	6,817	(1,752)	5,065	
경비비	33,585	(2,476)	31,109	
도서인쇄비	14,964	(1,293)	13,671	
교육훈련비	11,149	(4,017)	7,132	
사무용품비	1,567	(306)	1,261	
계량기교체비	124,308	(6,272)	118,036	
회의비	21,247	(2,229)	19,018	
고객센터수수료	1,223,977	(49,277)	1,174,700	
(B) 영업외비용	-	4,866	4,866	
기타	-	4,866	4,866	
(C) 영업외수익	-	-	-	
(D) 사회적배려자감면 등	107,241	-	107,241	
(E) 자연조정공급비용 차이	35,969	-	35,969	
(F) 법인세비용	1,038,964	(82,260)	956,704	
(G) 적정원가	9,090,387	(591,698)	8,498,689	A+B-C+D+E+F

2. 적정투자보수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영업비용	7,908,213	(514,304)	7,393,909	
(B) 감가상각비	2,859,338	(104,173)	2,755,165	
(C) 퇴직급여	-	-	-	
(D) 대손상각 등	77,173	(10,192)	66,981	
(E) 운전자금	828,617	(66,657)	761,960	(A-B-C-D) X 2/12
(F) 유형자산	46,654,361	(3,666,466)	42,987,894	
(G) 무형자산	179,704	(35,671)	144,033	임차보증금 포함
(H) 요금기저	47,662,681	(3,768,794)	43,893,888	E+F+G
(I)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J) 적정투자보수	3,683,598	(291,648)	3,391,949	H X I

3. 적정투자보수율 명세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단위: 천원)

과 목	회사제시	조정	조정안	비고
(A) 자본금불입액	3,066,667	-	3,066,667	
(B) 당기순이익누계	236,740,084	-	236,740,084	
(C) 배당금지금액누계	144,490,000	-	144,490,000	
(D) 자기자본	95,316,751	-	95,316,751	A+B-C
(E) 타인자본적수	-	-	-	
(F) 월평균잔액	-	-	-	E/12
(G) 자기자본보수율	4.73%	-	4.73%	
(H) 이자비용	-	-	-	
(I) 타인자본보수율	0.00%	-	0.00%	H/F X (1-0.22)
(J) 가중평균보수율	4.73%	-	4.73%	[(D X G)+(F X I)/(D+F)]
(K) 투자보수율 가산비율	3.00%	-	3.00%	
(L) 적정투자보수율	7.73%	-	7.73%	J+K